

## 일본, 도시녹지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https://www.mlit.go.jp/report/press/toshi07\\_hh\\_000250.html](https://www.mlit.go.jp/report/press/toshi07_hh_000250.html)

일본 정부가 도시의 녹지를 보전하고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충하기 위해 도시녹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자금 대부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환경의 질과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도시녹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의 세 가지 방향을 설명하였다.

### 국가 주도의 전략적 도시녹지 확보

먼저 도시녹지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도시녹지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세우고, 지자체(도도부현)가 광역계획을 책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적 환경의 정비 및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하였다.

### 도시녹지의 적극적인 보전·정비 지원

지자체가 재정이나 사업 노하우의 부족으로 녹지 보전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시녹지의 기능을 재생하고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능유지증진사업(機能維持増進事業)'을 도시녹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특별녹지보전지구(特別緑地保全地区)에서 기능유지증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대항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지원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도시환경의 녹색 정비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ESG 투자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이 열려 있으나 여전히 '녹지 확보 노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이를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를 지침으로 규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치에 충실하였을 때는 이를 인정하여 도시개발 자금 대출 등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처: shutterstock